

증권거래에 따른
자본이득세 도입방안

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
입법조사관 원종현

Tel. 788-4583/Fax. 788-4589
E-mail: secot@assembly.go.kr



요 약

질의 요지

증권거래시 이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위한 방안

(회답일 2010.2.23)

■ 조사 · 분석 방향

- 증권거래에 따른 자본이득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자본이득세 도입 방안을 강구

■ 주 요 내 용

- 자본이득세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

자본이득세 도입의 필요성	자본이득세 도입의 문제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세수 보전과 조세형평성 동시 획득▪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▪ 투기적거래 및 단기거래 지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실현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할 경우 현재와 미래의 소비배분을 왜곡▪ 중요한 생산요소인 자본의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최적 투자 배분을 방해▪ 성장단계에 진입한 국내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

- 자본이득은 실현될 때에만 과세되는 실현주의 원칙(realization principle)을 채택하고 있기에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양도 및 교환 등을 통해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음
- 자본이득세 도입을 위한 방안
 - 자본이득을 통상적인 소득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법리적 원칙을 확보함
 - 자본이득에 대응되는 자본손실에 대한 조세 차감문제를 해결함
 - 장기적으로 누적된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율을 적요하게 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
 - 자산보유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자본이득에 대한 유효세율을 높이는 경향에 대한 보정방법을 준비함
 - 자본이득세 부과에 따른 동결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
 - 조세조약마다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가 다르게 반영되기에 주요 조세협정 체결국과의 원천지 판별 기준을 수립함

목 차

1. 증권거래와 관련한 자본이득세의 개념	1
1) 자본이득세의 개념과 특징	1
2) 자본이득세 도입의 필요성	3
3) 자본이득세 도입의 문제점	4
2. 자본이득세 도입을 위한 방안	5
1) 자본이득에 대한 법리적 원칙 마련	5
2) 자본이득세 도입에 따른 형평성 확보	5
3) 실현주의 과세방식이 가지는 한계 극복	6
4) 외국 조세기준과의 합치성 수립	6
<참고문헌>	7

[붙임 1] 국가별 주식양도차액 과세 기준

1. 증권거래와 관련한 자본이득세의 개념

1) 자본이득세의 개념과 특징

- 자본이득이란 일반적으로 자산을 구입 혹은 입수 당시 가격이나 가치에서 처분할 당시 자산가치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이득세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함
 - 자본이득세는 실현주의 원칙(realization principle)을 채택하고 있기에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양도 및 교환 등을 통해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음
 - 자본이득과세는 자본자산(capital asset)에 대한 과세라는 의미에서, 순자산세(net wealth tax, net worth tax), 자본이전세(capital transfer tax), 자본이득세(capital gains tax)로 구분됨
- 자본이득세는 미국에서 1921년 연방소득세제가 도입된 이래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특정한 자본이득을 선별적으로 취급하였음
 - 위험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자극하고,
 - 몇 년에 걸쳐 상승된 총가치를 단 한 해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,
 - 자본이득에 보통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현재의 투자유형에 묶어놓게 된다는 이유로 선별과세하고 있음
 - 반면 선별적인 취급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통상적인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투자유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
- 한국은 현재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
 - 지분 3%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양도할 경우와 비상장주식 거래만 예외적으로 과세
 - 해외 주요국가들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없지만 한국은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0.15%, 농어촌특별세 0.15% 등 0.3%의 세금을 과세
-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주식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
 - 미국은 1913년 소득세법 도입이후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과세함
 - 주식의 경우 장기자본이득(1년 초과)에 대해 15%의 자본이득세를 과세
 - 오바마 정부는 이를 20%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
 - 1년 미만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보다 높은 세율인 소득세로 징수함

- 영국은 1962년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서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
 - 단순화를 위해 장기·단기자본 구분 없이 18% 단일세율로 자본이득세를 징수함
- 독일만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투기적 소득과 대규모 거래, 영업용자산 양도 시 종합과세하고 있음
 - 단기자본이득의 절반을 종합과세하며 장기자본이득은 비과세
- 일본은 상장주식·비상장주식·주식옵션에 이르기까지 20%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음

〈표 1〉 주요국의 과세현황

	유가증권		파생상품		자본이득세율
	거래세	자본이득세	거래세	자본이득세	
한국	○	×	×	×	
미국	×	○	×	○	11~28%
일본	×	○	×	○	선물: 20%
영국	×	○	×	○	자본이득에 따라 차등
프랑스	×	○	×	○	26%(50,000유로이상)
스페인	×	○	×	○	증권: 18%, 선물: 15%
독일	×	○	×	×	26.375% (09.1월부터)
스위스	○	×	×	×	
네덜란드	×	×	×	×	
룩셈부르크	×	×	×	×	
그리스	○	×	×	×	
벨기에	×	×	×	×	
호주	×	○	×	×	단기: 47%까지, 장기: 23.5% 까지
뉴질랜드	×	×	×	×	
브라질	×	○	×	○	15%
멕시코	×	×	×	×	
대만	○	×	○	×	선물: 0.01%, 옵션: 0.1%
싱가포르	○	×	×	×	
홍콩	○	×	×	×	
태국	○	×	×	×	
말레이시아	○	×	×	×	

주: 1. 영국은 취득세(인지세) 개념으로 매수자에게만 부과
 2. 대만은 '06년 이후 파생상품거래세 대폭 인하

자료: 세계거래소연맹(WFE)(2008), <http://www.world-exchanges.org/>

2) 자본이득세 도입의 필요성

□ 세수 보전과 조세형평성 동시 획득

- 소득세는 조세형평성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세제임
- 고액소득자의 경우 자본이득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에 합치
- 연간 4,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올리는 금융소득(이자소득+배당소득)종합과세 대상자는 2004년 2만3,184명에서 2007년 6만830명으로 약 26배 증가
-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도 4조9,423억 원에서 9조7,346억 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 상태임

□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

- 실현된 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원칙에 가장 적절하게 부합
 - 토지 등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면서도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비과세하였음
 -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납세근거가 확실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함
- 자본이득세 도입은 10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개인의 금융상품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종합해 과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금융소득을 파악하는 전산 시스템도 이미 갖춰져 있음

□ 투기적거래 및 단기거래 방지

- 단기수익을 위해 뛰어든 개미투자자들의 매매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개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의 문제를 해소
- 주식 등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투기화를 방지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
- 자본이득세 부과에 따른 동결효과(lock-in effect)발생
 - 자본이득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, 투자자들이 자본자산(capital asset)의 구성을 변화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현재의 자산구성 상태를 그대로 끌고 가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의미함

3) 자본이득세 도입의 문제점

- 실현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할 경우 현재와 미래의 소비배분을 왜곡함
 - 몇 년에 걸쳐 상승된 총 가치를 단 한 해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
 - 실현주의 원칙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수 년 간에 걸쳐 발생한 자본이득을 자산의 매각연도 한 해의 자본이득으로 집중하여 신고하게 됨
 - 이에 따라 자본이득을 매년 발생한 만큼씩 신고하면서 적용되었을 한계세율보다 높게 과세될 가능성이 큼
 - 투자이득은 당기의 소비를 억제하는 희생과 위험감수에 대한 보상으로써 자본이득세 도입은 자본축적 및 위험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을 방해함
- 중요한 생산요소인 자본의 축적과 최적 투자 배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
 - 자산별 자본이득세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 및 양도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매시점 조정으로 최적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킴
 - 동결효과로 인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, 자본이 안전자산 중심으로 몰리는 쏠림효과가 발생되면서 신성장 산업 등 벤처투자에 대한 민간투자가 감소될 수 있음
 - 한국을 이머징 시장으로 간주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투자자본을 해외시장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
- 성장단계에 진입한 국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
 - 증시 활황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와 막대한 증권거래세 수입,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
 - 장기투자자가 자리 잡았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지만 코스닥 테마주 열풍에서 보듯이 여전히 국내 시장은 단기 투기목적 주식투자가 성행하고 있음
- 상속세 폐지 논리 근거로 이용가능함
 - 자본이득세 과세는 기본적으로 '이익이 실현된 곳에는 과세한다'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음
 -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상속세 징수가 이중과세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
 - 이중부담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조세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어, 이를 자본이득세로 확대하여 대체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음

2. 자본이득세 도입을 위한 방안

1) 자본이득에 대한 법리적 원칙 마련

- 자본이득이 통상적인 소득의 일부분이라는 법리적 원칙이 중요함
 - 소득을 개인소비의 변화분과 순부(純富)의 변화분의 합계로 정의한다면, 자본이득은 마땅히 통상적인 소득으로서 과세되어야 함
 - 그러나 만약 영국 조세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득에 관한 정의를 받아들인다면, 자본이득은 소득의 지속적인 원천이 아니므로 과세할 수 없게 됨
 - 영국에서는 1962년까지 자본이득이 과세대상이 아니었고, 자본손실도 공제대상이 아니었음
 - 1962년에는 6개월 이하의 투기적인 단기이득을 보통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음
 - 미국에서는 단지 1년 이상의 장기자본이득의 40%만이 과세되고 있음
- 자본이득에 대응되는 자본손실에 대한 조세 차감문제
 - 자본손실을 자본이득에서만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이득이 아닌 소득세까지 반영할지의 문제가 발생
 - 손실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연도분에서만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부족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

2) 자본이득세 도입에 따른 형평성 확보

- 누진과세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
 - 최근 해외 주요국은 자본이득을 통상소득과 성격 및 발생시기 측면에서 차별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동등하게 과세하려는 경향임
 - 이 경우 소득종합과세 측면에서 누진세가 적용 될 경우 납세능력에 따른 응능(ability-to-pay)원칙이 훼손 될 우려가 있음
- 자산보유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자본이득에 대한 유효세율을 높일 수 있어 이를 보정해줄 필요가 있음
 - 장기보유에 따른 자산가치가 인플레이션에 미달되는 마이너스 수익을 나타냈음에도 시가의 증분으로 인한 차액의 과세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

- 투기적 단기거래를 지양하고 건전한 자본축적을 위해 자본이득세가 마련되었다면 이에 따라 장기투자에 대한 투자기간별 감면제도를 고려해야 할 것임

3) 실현주의 과세방식이 가지는 한계 극복

- 자본이득세 부과에 따른 동결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강구
 - 동결효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와 단기매매는 감소되면서 자본시장이 건전해 질 것임
- 반면, 자본이득의 실현을 연기함으로써 조세납부가 지연되면서, 이자·배당은 매년 과세되는 것에 반해 미실현이익이라고 과세가 안되는 것은 공평과 효율측면에서 문제가 있음
 - 자본이득의 실현이 상속시까지 연기되는 경우 조세부담이 완전하게 상속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발생

4) 외국 조세기준과의 합치성 수립

- 원천지 판별기준 수립
 - 거주지주의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거둔 자본이득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원천을 둔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하게 됨
 - 반면 원천지주의에 의할 경우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만 과세하게 됨
 - 자본이득과 관련하여 원천지 판별이 매우 복잡함
 - 한미조세협정에는 원천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
- 조세조약마다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가 다르게 반영됨
 - 한국은 한미조세협정 개정을 통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반대하는 상황임
 - 우리는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해 자본이득에 대한 원천 징수권을 확보하는 취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미온적인 입장임
 - 현재 한미조세협정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
 - 론스타와 같은 미국계 사모펀드가 우리 기업의 주식을 가져가 엄청난 차익을 남겨도 과세하지 못함

<참고문헌>

노영훈, 2002, 「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」, 한국조세연구원

안종석·권오성, 2005, 「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」, 한국조세연구원

오윤, 2009, 「자본과세론」, 서울: 한국학술정보

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, 2009, 「한국경제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」, 서울: 해남

세계거래소연맹(WFE)(2008), <http://www.world-exchanges.org/>

[붙임 1] 국가별 주식양도차액 과세 기준

국가	과세기준
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기자본이득: 소득세 한계세율(10~35%)로 종합과세 장기자본이득: 15%의 세율로 분리과세, 단, 종합소득에서 10%, 15%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5% 적용 과세특례: 5년 초과보유한 소규모사업 주식은 50% 공제 후 28% 세율 적용
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가 손실을 차감한 후 18% 단일세율 적용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, 국내, 적격 회사채 양도의 경우 비과세
독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기자본이득: 50%만 종합과세 장기자본이득: 비과세, 단 5년 동안 지분을 1%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
프랑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간 양도대가가 2만5,000유로 이하일 경우 비과세 이외의 경우 29%(소득세 18%+사회세 11%)와 27%(소득세 16%+사회세 11%)를 적용하여 분리과세 3년이상 보유한 지분을 25%이하 혁신 창업기업 주식 양도시 비과세
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장주식, 비상장주식, 주식옵션: 20% 세율로 분리과세
호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기자본이득: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(0~45%)적용해 과세 장기자본이득: 자본이득 중 50%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과세
캐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체자본이득 중 50%를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누진세율(15%~29%)적용하여 종합과세 캐나다 증권 및 몇몇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체 주식은 과세특례
스웨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식양도차액의 경우 이자, 배당, 임대소득과 묶어 자본소득으로 과세 (30% 단일세율) 일반적인 경우는 자본손실 중 70% 공제가 가능

자료: 노영훈(2002) 내용 정리

자본규제	자본의 질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본구조 단순화 ▪ <u>보통주가 아닌 기본자본 요건 강화: 부채인 경우 원금의 탕감 또는 보통주 전환조건 있을 것</u> ▪ 자본의 질 개선 (보통주 자본/위험가중 자산 규제)
	장외파생상품 추가 자본적립	
	레버리지 규제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<u>익스포저 = 대차대조표 자산, 난외계정 (신용환산율 100%로 전액 반영), 유동화 금액 전액 반영</u> ▪ 담보 및 신용경감기법 불인정
	경기순응성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호황기에 최저자본요구량 이상의 완충자본 추가 적립(목표 미달시 배당 제한 조치)
유동성 규제강화	단기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 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高유동자산/30일간 현금 순 유출 $\geq 100\%$
	중장기 지표인 순안정조달 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용가능한 안정적 자금/요구되는 안정적 자금 $\geq 100\%$ ※ 이용가능한 자금 안정적 자금: 자본, 1년 이상 우선주나 채무, 스트레스 상에서도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예금 ※ 요구되는 자금: 자산유동성 수준에 따라 자산가중치 차등화

자료: 금감원

주: 밑줄로 표시된 부문은 규제 시행 시 국내 은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임